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용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인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(안 제2조제9호)
 -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0호 →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

5. 검토내용

- 상위 법령인 「도로교통법」이 2011년 6월 8일 개정함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정의가 같은 법 제2조20호에서 제2조제22호로 이동하여 법 조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호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도로교통법」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9호 긴급자동차 정의 근거법령의 조항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